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♦♦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운송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운송업자이고 피고는 컴퓨터판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.
- 2. 20 ○ . . . 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컴퓨터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(갑 제 1호증 참조).

(1) 물 품 : 컴퓨터 1,000대

(2) 운 송 일 자 : 2000. 00. 0.

(3) 운 송 대 금 : 금 5,000,000원

(4) 대금지급기일 : 운송완료일자인 2000. 00. 0.

(5) 지연손해금 : 운송대금의 연 18%의 비율에 의한 금원

(6) 운 송 장 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3. 위와 같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컴퓨터 1,000대를 운송일자인 20〇〇. 〇 〇. 〇.에 운송장소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에 운송하였으나(갑 제2호증 참조), 피고는 운송대금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위 운송대금 5,0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운송대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운송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인 연 18%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물품운송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물품인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원고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				SOF KEIN TO SOF KEIN THE SOF KE	↑ 대한법률구조공단
관할	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www	
제출	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

11 11 -1 -1

욧

日]

- 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
-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
불 복 절 차

-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- 및 기 간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 - ·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나,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, 이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함(민법 제397조).
 - ·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,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임(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49644 판결).

기 타

·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 액의 대상이 된다.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 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, 지연손해 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 다.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「부당히 과다한 경우」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. 계약의 목적 및 내용,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,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 율, 예상 손해액의 크기,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 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,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 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,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 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, 여기의 「손해 배상의 예정액, 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 다(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9다38637 판결).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